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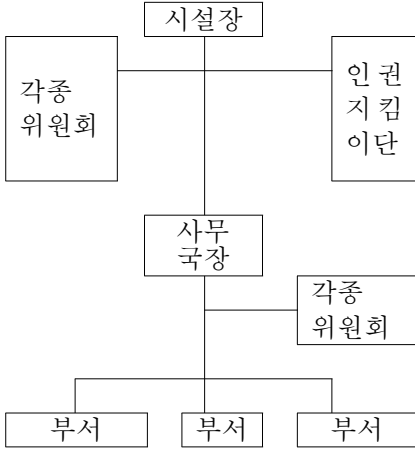
1. 2014년 주요 변경 검토 사항

<장애인 거주시설, 주간보호시설>

업무명	2013년	2014년	변경사유
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	<p>2.기본방향</p> <p><신설></p>	<p>2.기본방향</p> <p>○ <u>점검시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</u>을 포함한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·사생활보호·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및 시설운영비 보조금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결과를 시도에 보고한다.</p> <p>○ <u>시설장 교육 강화(보수교육 등에 필수 이수과목 지정)</u></p> <p>-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정책 -조직관리 -장애인인권실천과 서비스,윤리 등</p>	시설장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
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운영	<p>5-1.시설운영비 지원</p> <p><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></p> <p>-교대 근무자(생활지도원 등) 및 조리원 : 월 64시간, 연 768시간 기준</p> <p>- 기타 종사자(원장 포함) : 월 40시간, 연 480시간 기준</p> <p>* “연장근로”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뜻함</p> <p>* “야간근로”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 중 22:00~익일 06:00까지의 근로를 뜻함</p>	<p>5-1.시설운영비 지원</p> <p><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></p> <p>-교대 근무자(생활지도원 등) 및 조리원 : 월 64시간, 연 768시간 기준</p> <p>- 기타 종사자(원장 포함) : 월 40시간, 연 480시간 기준</p> <p>* “연장근로”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뜻함</p> <p>* “야간근로”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 중 22:00~익일 06:00까지의 근로를 뜻함</p> <p>* <u>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</u></p>	

업무명	2013년	2014년	변경사유
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운영	5-2.관리운영비 지원 ○ 관리운영비는 [별표3]의 예시를 참고하여 성질별로 집행하되 - 각 항목별로 균형있고 합리적 으로 집행하도록 한다.	5-2.관리운영비 지원 ○ 관리운영비는 지원항목이 비지정 방식(지출금지 항목만 지정)으로 지원항목을 특정할 수 없음 - 성질별(항목)별로 균형있게 집행 하되 집행시[별표3]의 지원대상 항목을 참고 함 * 시설 내 거주공간에 비치할 가 전용품 및 생활실 비품 등은 관리운영비 또는 후원금으로도 구입할 수 있음	

업무명	2013년	2014년	변경사유
<p>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</p>	<p>3.구 성 가. 위원회의구성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</p>	<p>3.구 성 가. 인권지킴이단의구성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시설 직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용어통일</p>
<p>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</p>	<p>3.구 성 나. 위원회의 운영 ○ 위원장의 선출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은 직원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. ○ 회의 종류 및 개최 횟수 - 정기회의 : 연 2회 이상 실시 - 사례회의 : 연4회(분기별 1회) 이상 실시 ○ 회의의 내용 - 정기회의 : 인권점검 상태 평가, 인권침해 사례 사실 확인, 인권교육의 계획과 시행 및 만족도 조사, 인권인식 개선사업 등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회의 - 사례회의 : 이용자의 인권과 관련한 사례회의와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회의</p>	<p>3.구 성 나.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○ 단장의 선출은 호선으로 하며 단장은 직원~~~ 지명한다. ○ 회의 종류 및 개최 횟수 - 정기·사례회의 : 연4회(분기별 1회) 이상 실시 ○ 회의 내용 - 정기·사례회의 :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,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 및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, 각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,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과 점검 내용에 따른 평가, 인권교육의 시행 및 만족도 조사,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(인권인식 개선사업 등) 등에 관한 회의</p>	

업무명	2012년	2013년	변경사유
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	<신설>	<p>3.구 성 다. 인권지킴이단의 설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인권지킴이단은 시설장과 별도의 논의구조를 가지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.</u> ○ <u>조직도 예시</u> 	시설과 관 계설정
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	<p>5. 운영 라. 인권점검 정례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매년 연 1회 이상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한다. 	<p>5. 운영 라. 인권점검 정례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매년 상반기에 연1회 이상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한다. 	상반기 점검 하반기 과정 및 평가
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	<신설>	<p>5. 운영 바.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시설장과 지자체는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한 시설 이용자, 직원,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</u> 	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

업무명	2012년	2013년	변경사유
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	<신설>	7. 기타사항 ○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, 시설장 재량의 휴가 등을 부여하여 담당 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	
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기준	4-1-3. 인권옹호 활동 (가) 민주적 의사소통 ○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 인권보장 회의를 개최하며, 침해예방활동가 평가에 대한 회의는 쌍방의 요청 시 수시로 한다.	4-1-3. 인권옹호 활동 (가) 민주적 의사소통 ○ ‘인권지킴이단’에서는 연 4회 이상 정기·사례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-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 -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,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-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 -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과 점검 내용에 따른 평가 - 인권교육의 시행 및 만족도 조사 -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(인권인식 개선사업 등) ○ 정기·사례회의 외에 인권지킴이단 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,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	
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기준	4-1-3. 인권옹호 활동 ○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“이용자 인권상황 점검”을 실시한다.	4-1-3. 인권옹호 활동 ○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상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“이용자 인권상황 점검”을 실시한다.	

업무명	2012년	2013년	변경사유
<p>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기준</p>	<p>4-2-6. 지원조치 <신설></p>	<p>4-2-6. 지원조치 ○ <u>시설장과 지사체는 이용자 인 권침해 사례를 고발한 시설 이 용자, 직원,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고 발 자 에 대한 보호 조치</p>
<p>거주시설 인권지킴 이단 운영규정 (예시)</p>	<p>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 면 및 임기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 및 임기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시설 직원은 1회에 한해서 연 임할 수 있다.</p>	<p>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기준 반영</p>
<p>거주시설 인권지킴 이단 운영규정 (예시)</p>	<p>제11조 회의의 종류와 안건 ① 회의의 종류는 그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정기회의와 사례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대면회의로 개최하고, 사례회의는 연 4회 이상(분기별1회 이상)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④ 사례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2. 사례를 지원 및 해결하기 위한 자문, 자료 수집 등</p>	<p>제11조 회의의 종류와 안건 ① 회의의 종류는 그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정기·사례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② 정기·사례회의는 연 4회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대면회의로 개최하며~~ 있다. ④ 정기·사례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 2.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,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3.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 4.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과 점검 내용에 따른 평가 5. 인권교육의 시행 및 만족도 조사 6.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(인권인식 개선사업 등)</p>	

업무명	2012년	2013년	변경사유
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 (예시)	제26조 인권점검 및 평가 ①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이용자와 직원 전원, 조사가능한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한다.	제26조 인권점검 및 평가 ①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(상반기 내) 이용자와 직원 전원, 조사가능한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한다.	
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 (예시)	제30조 지원조치 및 사후 관리 <신설>	제30조 지원조치 및 사후 관리 ③ <u>시설장과 지자체는 이용자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한 시설 이용자, 직원,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	